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. 9. 15 선고 2020가단3500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2. 9. 22 선고 2021나63867 판결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. 9. 15 선고 2020가단35003 판결

전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

담당변호사 임태훈

변 론 종 결 2021. 7. 21.

판 결 선 고 2021. 9. 15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E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2020. 1. 29. 체결된 매매계약을 17,454,40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7,454,409원 및 그 중 4,190,377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E은 2010. 9. 17. 주식회사 F로부터 4,190,377원을 대출받았고, 원고는 2017. 9. 11. 주식회사 G에게 양도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E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.

나.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2926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, 위 법원은 2019. 4. 24. “E은 원고에게 15,990,413원 및 그 중 4,190,377원에 대하여 2019. 4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.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”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, 위 지급명령이 2019. 4. 29. E에게 송달되어 2019. 5. 14. 확정되었다.

다. 한편, E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및 별지2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부동산을, E의 모 H이 별지2 목록 제14 내지 18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, E과 H은 2020. 1. 29.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80,000,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.

라. 피고는 2020. 1. 31.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, 같은 날 I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7,6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E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, 이는 원고를 포함한 E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, 원상회복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17,454,409원 및 그 중 4,190,3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E에 대하여 2017. 9. 11.자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, 위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는바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.

나. E의 무자력

살피건대,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,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바, 갑 제3,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E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(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더라도, E에게는 별지2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부동산도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),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다. 피고의 악의

설령 E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E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살핀 바와 같이 E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거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지 아니하고, 한편, 을 제2호증의 2,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, 감정인 J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인 경남 남해군 K에서 축사를 운영해 왔고, 축사를 확장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,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

부동산이 소재한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120,000,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,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6,006,400원,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의 시가는 110,779,000원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, 그 가격이 부당하게 염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, ③ 피고는 E와 평소 거래 관계나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, ④ 피고는 E의 요청으로 E와 친분이 있는 법무사 L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, 그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도 전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,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E의 채무상태를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E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아영